

목 차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2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3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3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3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입인)	3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3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3
가. 권유기간.....	3
나. 피권유자의 범위	4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5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5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5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5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5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6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6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6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6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6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8
<input type="checkbox"/> 재무제표의 승인	8
<input type="checkbox"/> 정관의 변경	11
<input type="checkbox"/>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14
<input type="checkbox"/>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15
<input type="checkbox"/>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15
<input type="checkbox"/>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17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3월 11일

성명 : 주식회사 링크솔루션
권유자: 주소 : 경기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0번길 41-4 디에스세미콘 5층
전화번호 : 031-422-1932
성명 : 조한창
작성자: 부서 및 직위 : 재경부 / 이사
전화번호: 031-422-193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주)링크솔루션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6년 03월 11일	라. 주주총회일	2026년 03월 27일
마. 권유 시작일	2026년 03월 14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 및 의결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해당사항 없음	(관리기관)	-
(인터넷 주소)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투표 관리기관)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input type="checkbox"/> 재무제표의승인			
<input type="checkbox"/> 정관의변경			
<input type="checkbox"/> 이사의보수한도승인			
<input type="checkbox"/> 감사의보수한도승인			
<input type="checkbox"/> 주식매수선택권의부여			
<input type="checkbox"/>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링크솔루션	기명식 보통주	0	0	본인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최근식	대표이사	보통주	1,410,569	25.08	대표이사	-
이강욱	등기임원	보통주	18,000	0.32	CTO	-
윤형선	미등기임원	보통주	100,050	1.78	사업전략실장	-
계		-	1,528,619	27.18	-	-

(주1) 소유주식수는 제11기 기말(2025.12.31)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조한창	보통주	0	임원	임원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지원자산관리(유)	법인	-	-	-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위탁범위	연락처
지원자산관리(유)	염종수	서울 서초구 방배로 138, 3층	정기주주총회 위임장 확보 등 관련 의결권 대리 권유업 무	02-2677-8210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6년 03월 11일	2026년 03월 14일	2026년 03월 26일	2026년 03월 27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5년 12월 31일 기준일 현재 의결권 있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 전체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 및 의결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 미만 주주 대상으로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할 예정이고,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 이상 주주 대상으로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우편으로 송부할 예정입니다.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인터넷 주소	비고
(주)링크솔루션	https://lincsolution.com/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피권유자가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전자우편을 통하여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받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를 배부할 계획임.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주 소 : 우편번호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41-4, 디에스세미콘 5층 (주)링크솔루션 재경부 주주총회 담당자 전화번호 : 031-422-1932 팩스번호 : 031-422-1931
- 우편 및 팩스 접수 여부 : 가능
- 접수 기간 : 2026년 3월 14일 ~ 2026년 3월 26일 제11기 정기주주총회 개시 전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해당사항 없음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6년 3월 27일(금) 오전 11시
장 소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27번길 11-41 안양창업지원센터 9층 강당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투표 기간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주주총회 참석 시 제출서류 가. 직접행사 : 본인 신분증 나.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지참)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은 원본만 인정되며, 사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제1호 의안 : 제11기(2025.1.1~2025.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당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C29222)의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제조업”에 속하는 회사로, 3D 프린터 제조 및 3D 프린팅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3D 프린팅이란 3차원 모델링 데이터를 이용하여 소재를 적층함으로써 3차원 물체를 제조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당사는 SLA, FDM, MBJ 3D 프린터 제품을 자체 개발하여 상용화에 성공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3D 프린터 제품’ 판매와 더불어 ‘3D 프린팅 서비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3D 프린팅 서비스란, 고객사가 원하는 3D 프린팅 출력물을 당사의 3D 프린터를 통해 생산 및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고객사는 직접 3D 프린터를 보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설비 구매 및 관리에 대한 부담을 해소할 수 있으며, 당사는 다수의 3D 프린터로 구성된 대규모 공장을 가동하여 규모의 경제에 기반한 양산 비즈니스를 영위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3D 프린팅 서비스 제공 분야는 모빌리티, 항공/우주, 국방, 소비재/메디컬, 로봇/반도체 등입니다. 모빌리티 분야에서 3D 프린팅은 자동차 양산을 위한 R&D 기간을 단축시키고 A/S부품 및 단종 부품에 관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나. 당해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 당사의 아래의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여 작성되었으며,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후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이나,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재무제표 및 주석사항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개별재무제표

<재 무 상 태 표>

제 11 기 2025. 12. 31 현재

제 10 기 2024. 12. 31 현재

(단위 : 원)

과 목	제 11 기	제 10 기
-----	--------	--------

자 산			
I. 유동자산		32,081,268,672	21,944,904,926
현금및현금성자산	4,409,423,125		13,782,920,277
단기금융상품	16,997,586,041		-
매출채권	4,931,862,688		4,011,488,961
기타유동금융자산	2,070,786,942		156,248,939
당기법인세자산	56,610,930		70,605,580
재고자산	724,733,887		1,948,700,703
기타유동자산	2,890,265,059		1,974,940,466
II. 비유동자산		34,107,505,435	13,705,021,321
장기금융상품	2,500,000,000		
기타비유동금융자산	25,697,511		601,894,267
유형자산	27,131,910,430		9,898,934,273
사용권자산	524,199,317		828,146,901
무형자산	239,755,166		228,903,162
이연법인세자산	3,685,943,011		2,147,142,718
자 산 총 계		66,188,774,107	35,649,926,247
부 채			
I. 유동부채		16,718,423,689	12,284,143,289
매입채무	1,019,988,640		586,908,074
단기차입금	13,800,000,000		10,000,000,000
기타유동금융부채	1,121,166,413		1,010,251,111
기타유동부채	231,615,510		60,219,420
유동성장기부채	50,000,000		50,000,000
유동성리스부채	410,525,522		538,450,622
유동성충당부채	85,127,604		38,314,062
II. 비유동부채		11,118,873,963	1,155,504,898
장기차입금	6,935,000,000		175,000,000
장기미지급금	801,080,163		685,395,313
기타비유동부채	3,292,575,000		
리스부채	90,218,800		256,911,620
충당부채	-		38,197,965
부 채 총 계		27,837,297,652	13,439,648,187
자 본			
I. 지배기업소유주에 귀속되는 자본		38,351,476,455	22,209,006,405
I. 자본금	562,403,200		465,203,200
II. 자본잉여금	62,369,306,631		41,191,124,829
III. 기타자본	2,611,758,271		937,514,341
V. 이익잉여금	(27,191,991,647)		(20,384,835,965)
II. 비지배지분		-	1,271,655
자 본 총 계		38,351,476,455	22,210,278,060
부채 및 자본총계		66,188,774,107	35,649,926,247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제 11 기 (2025. 01. 01 부터 2025. 12. 31 까지)

제 10 기 (2024. 01. 01 부터 2024. 12. 31 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11 기	제 10 기
I. 매출액	13,124,605,399	11,187,804,975
II. 매출원가	12,399,618,218	8,485,523,173
III. 매출총이익	724,987,181	2,702,281,802
IV. 판매비와관리비	8,102,634,877	6,699,193,248
V. 영업이익	(7,377,647,696)	(3,996,911,446)
금융수익	430,233,909	1,322,753,583
금융원가	250,362,506	1,227,058,670
기타수익	14,741,216	67,906,961
기타비용	339,364,296	3,554,912
V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7,522,399,373)	(3,836,864,484)
VII. 법인세비용	(715,243,691)	(1,293,905,524)
VIII. 당기순이익	(6,807,155,682)	(2,542,958,960)
지배기업소유주지분	(6,807,155,682)	(2,542,830,551)
비지배지분	-	(128,409)
IX. 기타포괄손익	-	-
X. 총포괄이익	(6,807,155,682)	(2,542,958,960)
지배기업소유주지분	(6,807,155,682)	(2,542,830,551)
비지배지분	-	(128,409)
XI. 주당이익		
기본주당순이익	(1,310)	(1,496)
희석주당순이익	(1,310)	(1,496)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결손금처리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리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제 11 기 (2025. 01. 01 부터 2025. 12. 31 까지)

제 10 기 (2024. 01. 01 부터 2024. 12. 31 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11 기	제 10 기
I. 미처리결손금		(20,373,562,586)
1.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주1)	(20,384,835,965)	(17,825,933,414)

2. 당기순손실	(6,807,155,682)		(2,547,629,172)	
II. 결손금처리액		-		-
III.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27,191,991,647)		(20,373,562,586)

당사는 전기 결손금처리계산서를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당기 종속기업 청산으로
(주1) 인하여 결손금처리계산서를 개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함에 따라 기초시점 결손금 차이가 발생하
였습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정관의 변경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p>제12조 (신주인수권)</p> <p>① 생략</p> <p>② 생략</p> <p>1. <u>발행예정주식총수의 100분의 50</u>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p> <p>2. 상법 제340조의2, 동법 제542조의3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p> <p>3. <u>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따라 발행예정주식총수의 100분의 20</u> 범위 내에서 <u>우리사주조합원에게</u>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p> <p>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u>우리사주매수선택권</u>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p> <p>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5의 규정에 의하여 <u>발행예정주식총수의 100분의 30</u>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u>주식예탁증서(DR)</u>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p> <p>6. <u>발행예정주식총수의 100분의 30</u>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p> <p>7. <u>발행예정주식총수의 100분의 30</u>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p> <p>8. <u>발행예정주식총수의 100분의 30</u>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이하생략)</p>	<p>제12조 (신주인수권)</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 <u>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u>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p> <p>2. 상법 제340조의2, 동법 제542조의3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p> <p>3. <u>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u> 범위 내에서 <u>우리사주조합원에게</u>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p> <p>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u>우리사주매수선택권</u>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p> <p>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5의 규정에 의하여 <u>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u>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u>주식예탁증서(DR)</u>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p> <p>6. <u>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u>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p> <p>7. <u>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u>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p> <p>8. <u>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u>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이하생략)</p>	<p>코스닥 상장회사 표준정관 문구로 변경. *시행일 : 26.3.27</p>
--	--	---

<p>제24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신설></p>	<p>제24조 (소집지와 개최방식) ① (현행과 같음) ② <u>회사는 이사회</u>의 결의로 상법 제 542조의 14 제1항에 따라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p>	<p>상법 제542조의14(전자주주총회), 제542조의15(전자주주총회의 운영) 신설에 따라 전자주주총회 개최시 근거규정 도입. *시행일 : 27.1.1</p>
<p>제28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생략)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u>서면(위임장)</u>을 제출하여야 한다.</p>	<p>제28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u>서면 또는 전자문서를</u> 제출하여야 한다.</p>	<p>상법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 행사) 개정사항 반영. *시행일: 27.1.1</p>
<p>제33조 (이사의 수) 당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고, <u>사외이사를</u> 둘 수 있다.</p>	<p>제33조 (이사의 수) 당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고, <u>독립이사를</u> 둘 수 있다.</p>	<p>상법 제542조의8(독립이사의 선임) 개정사항 반영. *시행일: 26.7.23</p>
<p>제37조 (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u>회사를</u>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④ (생략) <제2항 신설, 기존 제2항, 제3항, 제4항 항번호 변경></p>	<p>제37조 (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u>회사 및 주주</u>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u>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하여야 한다.</u> ③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이사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p>	<p>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등) 개정사항 반영. *시행일: 26.3.27</p>
<p>제38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u>주주총회의 결의로</u> 이를 정한다. ② 생략</p>	<p>제38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u>주주총회에서 승인</u>받은 『<u>등기이사보수규정</u>』을 따른다. ② (현행과 같음)</p>	<p>등기이사보수규정 신규 제정을 위한 정관개정. *시행일: 26.3.27</p>

<신설>	제38조의2 (이사의 책임감경)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독립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400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내용 반영. *시행일: 26.3.27
<신설>	부 칙(2026.3.2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집지와 개최방식 및 의결권의 대리행사에 관한 적용례) 제24조, 제28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독립이사에 관한 적용례) 제33조,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전자주주총회 및 대리권 증명과 관련한 조항의 시행시기 반영.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상법 제542조의8 등 개정시기 반영.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 이사의 수 ·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4명(1명)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3,000백만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4명(1명)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595백만원
최고한도액	1,500백만원

(주1) 보수한도액은 급여, 상여, 스톡옵션 행사이익 등의 경제적 이익을 모두 포함(퇴직금 제외)하는 금액에 대한 한도액을 의미함.(퇴직금은 정관에 의거 별도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름)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4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 감사의 수 ·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1명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100백만원

(전 기)

감사의 수	1명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10백만원
최고한도액	100백만원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제5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여야 할 필요성의 요지

- 회사의 경영, 기술혁신, 이익증대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의 성과보상 및 동기부여.

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성명	직위	직책	교부할 주식	
			주식의종류	주식수
김대중	임원	기술이사	보통주	7,947주
주재로 외 41명	임원 및 직원	부서장 외	보통주	34,085주

총(43)명	-	-	-	총 42,032주
--------	---	---	---	-----------

*부여대상자 중 등기임원은 없으며, 직원(미등기임원 포함) 중 개인별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부여 주식수 합계로 기재하였습니다.

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그 행사에 따라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그 행사가격, 행사 기간 및 기타 조건의 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부여방법	신주발행교부	-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보통주 / 42,032주	발행주식총수의 0.74%
행사가격 및 행사기간	(1)부여일 전일(3/26,목)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2개월, 1개월 및 1주일간 각각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 가격에 대한 산술평균가격으로 결정 예정.(※ 상법 제340조의2 제4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 7 제3항의 규정 준용) (2)행사기간 : 2028.3.28~2031.3.27(3년) (부여일 이후 2년 경과한 날로부터 3년간 행사가능)	-
기타 조건의 개요	상기 내용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사항은 관련 제반 법령, 회사 정관, 부여 계약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름.	-

라. 최근일 현재 잔여주식매수선택권의 내역 및 최근년도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행사 및 실효내역의 요약

- 최근일 현재 잔여주식매수선택권의 내역

총발행주식수	부여가능주식의 범위	부여가능주식의 종류	부여가능주식수	잔여주식수
5,714,307주	발행주식총수의 10%	보통주	571,430주	92,125주

(*) 기발행 미행사 주식수 및 부여가능 잔여 주식수는 금번 주총소집공고일 이후부터 주주총회 개최일 전 날까지의 기간동안 추가 행사가 있을 경우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최근 2사업연도와 당해사업연도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행사 및 실효내역

사업년도	부여일	부여인원	주식의 종류	부여 주식수	행사 주식수	실효 주식수	잔여 주식수
2024년	2024.02.14	53	보통주	199,950	90,275	21,825	87,850
계	-	총(53)명	-	총(199,950)주	총(90,275)주	총(21,825)주	총(87,850)주

(*) 기발행 미행사 주식수 및 부여가능 잔여 주식수는 금번 주총소집공고일 이후부터 주주총회 개최일 전 날까지의 기간동안 추가 행사가 있을 경우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제6호 의안 : 『등기이사보수규정』 신규제정 승인의 건

가. 의안 제목

- 등기이사보수규정 신규제정 승인의 건

나. 의안의 요지

(1) 목적

: 등기이사 보수의 한도,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등기이사 보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등기이사 보수 체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함.

(2) 적용대상 : 등기이사(사내이사, 독립이사, 기타비상무이사)

(3) 보수의 범위

: 등기이사에게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금전 및 금전 외의 경제적 이익을 말하며, 기본급, 성과급 등을 포함함.(단, 주주총회에서 별도로 승인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은 포함하지 아니함)

(4) 연간 보수한도액 : 30억원

(5) 규정의 개정

: 보수 한도의 증액을 수반하는 개정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으며, 그외 사항에 대한 개정은 이사회 결의로 함.

-이상-